經營合理化 IDEA SERIES ③

企業附設 골板紙包裝技術硏究所 惠澤

1. 硏究費 15%稅額 控除支援
2. 職員人件費 控除
3. 硏究所不動産地方稅 免除
4. 試驗機器도 控除

技術開發準備金 損金算入

골板紙包裝組合 附設 韓國包裝·物流硏究所 提供

1. 企業附設 골板紙包裝技術硏究所 (技術硏究課 包含)設置 必要性

1. 문제의 제기

주지의 사실과 같이 세계경제사회는 권역별 블록화와 개방화로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였다.

여기에서 개개기업이 생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국제경쟁력 강화전략은 산업별, Item별 각 기업의 능력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그 공통요소를 분석해보면

제1요소 : 가격(價格)

제2요소 : 품질(品質)

제3요소 : 포장(包裝)·물류(物流)

임이 분명하며, 이것이 최근에 대두된 신학설이다.

2. 국제경쟁 3대요소 해설

① 국제경쟁 제1요소 : 가격

가격은 소비자가 가장 먼저 떠 올리는 요소임으로 가장 중요한 첫째 요소가 된다. 그럼으로 경쟁상대국의 기업이나, 국내 동업종의 경쟁기업과 경쟁하여 이기기 위해서는 가격이 저가, 싸야한다. 가격문제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된다.

a. 동질(同質)·고가(高價)〉경쟁력 약
b. 동질(同質)·저가(低價)〈경쟁력 강
c. 고질(高質)·동가(同價)〈경쟁력 강
d. 저질(低質)·동가(同價)〉경쟁력 약
e. 고질(高質)·저가(低價)〈경쟁력 최고

이런 공식을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기업이 이러한 상관관계가 시장경쟁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며,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깊게 생각하여 대책을 세운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다.

우선 상품의 정가표 상 제시된 가격이 소비자의 지불준비심리와 맞떨어져야 하며, 이때 이 정도면 좋다는 효용심리의 작용이 일어나면서 동종 타 상품과의 품질비교가 시작된다. 여기에서의 위의 다섯가지 공식의 적용이 있은 후에 최종 구매의사가 결정된다. 그럼으로 값은 저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원리가 상품 품질의 차별화가 엄격하지 아니한 골판지 포장제품에 있어서는 그 적용에 문제는 있으나, 앞으로 골판지포장도 품질과 가격대비 시대가 전개 된다는 점을 도외시 해서는 않된다.

「싼 가격이어야 이길수 있다」는 의미는 경쟁상대 가격보다 싸게 팔면된다, 싸게 팔아야한다는 말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가격은 상품 가격 = 재료비 +

생산비 + 유통비 + 이윤에서 투입비용 + 이윤의 이윤을 확보한 가격이 이길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결국 국제경쟁 강화 차원의 가격 정책이란 재료비 중 Loss 절감에 의한 Cost Down, 생산성 향상에 의한 단위당 생산비의 Down, 상류(商流), 물류(物流)의 합리화에 의한 유통 Cost Down을 말한다.

골판지 포장제품이라고 이 원리의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② 국제경쟁 제2요소 : 품질

소비자는 누구나 더욱이 소득이 증대될수록 고품질의 상품, 고급음식을 선호한다. 그러므로 「국제경쟁 제1요소 : 가격」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저질 · 동가」인 경우는 경쟁력이 약하며,「동질 · 저가」이거나, 「고질 · 동가」인때만 경쟁력이 강할것은 당연하다.「고질 · 저가」인때엔 경쟁력이 최고라 함은 거듭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국제 경쟁에서 상품의 품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다. 그러면 이 품질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품질이라 하면 상품이 그 사용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갖추고 있어야 할 성질을 말하지만, 오늘에 있어서는 그 제품의 수명, 내구성 그리고 신뢰성 까지도 품질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또한 품질의 의미는 상품의 품질에 국한하지 않고 은행이나 항공회사에서 행하는 서비스의 질, 기업경영의 질도 광의의 품질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상품의 품질이 중요한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상품의 품질이 경쟁국 또는 경쟁회사와 경쟁하여 이기기 위해서는 현존상품의 ① 소재품질 ② 가공품질 ③ 디자인 · 포장 품질 ④ 성능품질 ⑤ 사용편의 품질 ⑥ 내구성품질 ⑦ 안전성 품질 등 7대 품질 요소가 경쟁회사보다 우수해야 한다. 이것은 현존상품의 품질의 개량 노력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개량 Program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관건이다. 이것을 일러 기술개발이라 한다. 막연히 외치는 기술개발에서 이러한 7대 요소를 개량하는 구체성을 갖는 기술혁신만이 경쟁에서 이길수가 있는 것이다.

현존 상품의 시장을 뛰어넘는 품질경쟁은 바로 신제품개발이다. 현존제품에 대한 부분적 개량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착상에 의한 창작 기술이다. 여기에는 End User의 소비기호, 미래예측력, 환경정책 등 폭넓은 요인과 정보를 토대로 개발 할 수가 있다. 그럼으로 품질 향상은 기술개발을 기초로 그 상품의 목적을 완수하도록 하는 종합예술이다. 이와 같은 조건은 A형 상자 일변도의 골판지 포장산업에 있어서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신제품 개발면에서나, 현존 골판지 포장재의 개선 · 개량차원에서 기술개발의 신기원이 절실하다.

③ 국제경쟁 제3요소 : 포장 · 물류

자사 상품의 가격과 품질이 경쟁회사 보다 우월한 상품을 시장에 보냈을 때, 만일 그 상품을 포장한 포장의 품위나 질이 조잡하거나, 상품의 가치와 어울리지 아니할때의 경쟁력은 과연 어떠할까? 이런 자문자답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포장을 일러 상품의 얼굴이요, 옷이라고 한다. 이것은 포장되어 있는 내용상품을 상징함을 뜻한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도 있다. 더구나 진열되고 있는 상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접근하여 흥정을 해 보겠다는 「구매동기」의 충동은 내용상품의 질과 가격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 포장표면에 쓰여있는 상품명과 그 포장의 인상을 보고 다가오는 것이다.

포장에서 주는 인상의 요인을 그 포장의 ① Color ② Form ③ Style ④ 호감, 친근성 ⑤ 안정성이 주가된다. 결국 내용상품을 보기전에 소비자의 구매심리를 끄는 것은 첫선을 보여주는 포장이다. 포장은 이러한 판매소구력을 주는 무언의 Salesman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적정포장 사용에 의한 상품의 원질보존과 외력의 침해에 대한 상품의 보호 및 손실 Cost를 감소함은 물론 표준치수 포장 사용에 의한 증적(增積)효과로 보관 Cost 및 수송 Cost등 물류비 절감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나아가 품위있는 고급포장은 내용상품을 더욱 돋보이게 하여 상품의 고가화와 소비자의 만족을 가져다 준다.

그럼으로 포장은 앞에서 말한 가격 및 상품과 더불어 중요한 경쟁 요소일 뿐 아니라 가격과 품질을 종합한 총합적 기능을 갖고 있는것이 포장이다. 그럼으로 포장기술연구와 포장경제성 이론 개발이 절실한 시점이다.

2. 企業附設 包裝技術硏究所 設置要領

근대 유통경제사회에 있어, 산업 필수품인 골판지포장등 포장의 중요성은 국제화, 세계화와 더불어 가일층 중시되

기에 이르러, 골판지 포장제조업체의 책임이 그만치 막중함으로 이를 긍지로 알고, 기업을 건전 발전시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길은 이러한 여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고품질」, 「저가격」의 품위있는 우수 포장을 개발하는 길 뿐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부설 포장기술연구소 또는 포장기술연구과(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다음에 기업부설 포장기술연구소 설치요령의 대강을 적기 한다.

① 기업부설 포장기술연구소 설치위원회 구성
  a. 기술이사 및 관리이사 공동위원장 맡음
  b. 각 부·과장의 정원 3분 2 이상을 위원으로 선정 발기
② 기업부설 포장기술연구소 설치 기본계획 수립
  a. 위원회 회의 개최, 지표 및 방향토론
  b. 위원회 토론내용 정리 브리핑차트 작성
  c. 최고 경영자 및 전사원 참석 총회장에서 브리핑 및 의견 토론
  d. 이사회에 부의 기업부설 포장기술연구소 설치안 의결
③ 기업부설 포장기술연구소 설치 규정 제정
  a. 제1조(명칭)
  b. 제2조 (목적)
  c. 제3조(사업)
  d.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e. 제5조(조직)
  f. 제6조(연구부회)
  g. 제7조(직제)
  h. 제8조(기술·경영· 정보 자료실 설치)
  i. 제9조 (연구 기본계획의 수립)
  j. 제10조(제안제도와 특허)
  k. 제11조(정보관리)
  l. 제12조(연구 사보 발간)
  m. 제13조(연관업체와의 협업화)
  n. 제14조(급여 및 연구수당)외 기타
④ 기업부설 포장기술연구소 운영과 세법 연구, 각종 조세지원 제도 및 세제혜택 신청 절차 습득
⑤ 기업부설 포장기술연구소 자료통계 비치주력
  a. 각 연관단체·기업사보 발행회사에게 기업부설 포장 기술연구소 설치안내와 부설 연구소 기술·경영정보 자료실 영구비치 간행물 무상기증 제공 요청
  b. 각종 연관 국내외 도서·구입비치

3. 企業附設 包裝技術硏究所에 對한 現行 租稅支援制度

정부는 UR, GR, TR, WTO 등 무국경 무한 경쟁시대에 대비한 국제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기업부설 기술연구소의 설치 운영시에는 기업의 수입금액중 3~4%를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적립하여, 이 재원으로 연구소 직원의 인건비, 시험연구비, 연구소 건물, 해외연구 출장비, 특허료, 디자인 개발비, 기술연수비 등의 지출 및 연구시험 기기의 특별상각,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등의 조세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은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금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의 급여를 주어, 결국 회사돈을 안쓰고 회사를 위한 기술연구개발을 하는 셈이된다.

다음에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조세지원 정책을 게재한다.

韓國골板紙包裝工業協同組合 附設
韓國包裝·物流硏究所 設置 案內

1. 設置 年月日 : 1994. 9. 2

2. 硏究事業
  ① 포장·물류 경제이론 연구체계화
  ② 포장·물류 기술이론 개발정립
  ③ 포장·물류 규격화·연구보고서 간행
  ④ 포장·물류 국제회의 ·토론회
  ⑤ 포장·물류 컨설팅

3. TEL (02) 594-0381~4
  FAX (02) 594-1310

◆ 現行 産業技術開發 租稅 支援 制度

❶ 기술개발준비금

기술개발비, 기술정보 및 훈련비, 연구시설투자등 기술혁신관련투자계획 금액을 투자개시전에 미리 손금으로 산입토록 하고, 이를 3년 이내에 기술개발 및 관련활동에 투자토록 하는 제도임(기술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4조, 조감법 제8조)

1. 적립할 수 있는 자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의 가공·조립·정비 및 연구개발사업, 금융·보험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무역업

2. 적립한도

○ 수입금액의 3%(기술집약적인 산업의 경우에는 4%)에 상당하는 금액(조감법 제8조)

3. 사용기간 및 범위

○ 3년 이내에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 기술정보, 기술훈련, 연구시설 등에 사용하여야 함.

4. 미사용금액에 대한 조치

○ 미사용금액은 3차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함과 동시에 해당세액에 연리 14.6%(10.95%)의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함.

5. 적립·사용절차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한자 → 소관세무서

- 기술개발준비금 조정명세서제출(매년과세표준신고시)
- 기술개발준비금 사용명세서제출(법정사용기간이 끝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문 의 처

○ 재정경제원 조세정책과 : (02) 503-9282/3
○ 과학기술처 기술개발과 : (02) 503-7657, 500-3247·3256
○ 소 관 세 무 서 :

【참고】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조감법시행령[별표 2])

업 종	품 목	
1. 기계공업	① 시험계측기	⑫ 고속자동제봉기(6천 RPM 이상의것, 쌍침의 것 또는 자동사절식의 것)
	② 광학기기	
	③ 금속가공기계	⑬ 반도체장비 및 부품
	④ 금속공작기계	⑭ 정밀금형 반도체·항공기·전자기기용의 것
	⑤ 플라스틱가공기계	⑮ 고성능옵셋인쇄기(공압기·컴퓨터식의 것)
	⑥ 내연기관	⑯ 지게차(엔진식의 것)
	⑦ 자동차·기관차 또는 전동차	⑰ 유공압기기부품(펌프·모터·밸브·실린더))

〈 ① 기술개발 준비금 〉

업 종	품 목	
	⑧ 산업용 로보트 ⑨ 의료기기 ⑩ 건설중앙비유압비품 ⑪ 고성능제트직기(500RPM 이상의 것)	⑱ 레이저 응용기기 또는 기계 ⑲ 자동차부품(제동장치 · 현가장치 · 조향장치 · 전장장치 · 공조장치 · 전자제어장치 · 배기가스 정화장치 · 파워트레인) ⑳ 냉매압축기
2. 전자공업 가. 전자기기	① 전자교환기 ② 광통신케이블 및 장치 ③ 방송통신장치 ④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와 연결되는 단위기기 ⑤ 사진 및 모사전송장치 ⑥ 정보통신 및 뉴미디어 전자기기(첨단)	영상 · 음향기기 및 광융합기기의 경우에는 그 신호처리가 디지탈방식인 것) ⑦ 전자식의료기기 ⑧ 자동제어장치 ⑨ 전자식계측장치 ⑩ 위성방송 및 통신송신수신기
나. 전자부품	① 반도체소자 ② 직접회로 ③ 전자관 ④ 광섬유 ⑤ 폴리에스터 필름 및 자기테이프 ⑥ 칼라브라운관용 쉐도우 마스크 ⑦ 소형전동기 ⑧ 인쇄회로용 동박적층판 및 동박 ⑨ 리이드 프레임 ⑩ 세금선 ⑪ 고순도규소봉 및 박판	⑫ 전자관용 유리 ⑬ 자기헤드 ⑭ 크림솔더 ⑮ 압전필터 및 착화소자 ⑯ 센서 ⑰ 칩부품 ⑱ EMI 부품 ⑲ 자기디스크 및 광디스크 ⑳ 콘넥터 ㉑ 평면형 및 대형브라운관(25인치 이상) ㉒ 자성재료
3. 전기공업	① 전력전자기기(인버터 또는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② 진공차단기용 밸브 ③ 고주파제어방식 용접기
4. 항공공업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의한 항공공업	
5. 방위산업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	
6. 정밀화학	① 의약품 ② 염료 ③ 농약원재 ④ 감광재료 ⑤ 향료 ⑥ 안료 ⑦ 계면활성제 ⑧ 고무 및 플라스틱 첨가제	⑨ 촉매 ⑩ 첨가물류 ⑪ 시약 ⑫ 기능성 색소 ⑬ 염 · 안료 중간제 ⑭ 공업용접착제(초산비닐아크릴계 · 비닐우레탄계 · 할메트접착제 · 나이론에폭시계접착제 · 실리콘계 접착제) ⑮ 전자공업용 약품
7. 신소재산업		

〈 ① 기술개발 준비금 〉

가. 신금속재료 제조업	① 초내열식합금 ② 비정질합금 ③ 형상기억합금 ④ 자성재료(하이- 비규소강판 · 초고투자율	재료 · 초고 영구자석재료 · 회토류자석용 재료 ⑤ 초고인성합금 ⑥ 철분말 제조업 ⑦ 초전도 재료
나. 정밀요업 제조업	① 전자전기용 세라믹스 ② 기계구조용 세라믹스 ③ 고온 내화용 세라믹스	④ 생화학용 세라믹스 ⑤ 광학용 세라믹스
다. 고기능성 고분자재료 제조업	① 폴리아미드 ② 폴리아세탈 ③ 고성능분리막 ④ 전도성수지	⑤ 고강도섬유(탄소섬유 · 아라미드섬유 또는 케블라 섬유) 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⑦ 의료용 고분자 ⑧ 고분자분리막
라. 복합재료 재조업	① 섬유강화플라스틱	② 섬유강화금속
8. 유전자산업	① 의약품 ② 농약품	③ 식품
9. 정보…	① 컴퓨터설비자문 ② 소프트웨어의 자문 · 개발 및 공급 ③ 자료처리 ④ 데이타베이스	⑤ 부가통신
10. 석유화학 및 석유정제업	① 고순도 페놀아세톤 ② 비스페놀 - 에이 ③ 에폭시 ④ 중질유 분해	⑤ 탈황
11. 엔지니어링 산업	① 산업시스템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② 환경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주) 9. 정보… :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

【참고】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조감법시행령[별표 3])

구 분	사 용 기 준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 개량비	가. 자체기술개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자체 기술개발을 위한 다음의 비용 ①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 부품 ·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및 시험연구비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용 물품 · 기자재 · 장비 · 시설의 임차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 기술개발 ① 다음의 기관에서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 · 공립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 ① 기술개발 준비금 〉

구 분	사 용 기 준
	㉮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산업디자인 · 포장진흥법에 의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②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2. 기술정보비	가. 국내외 과학기술자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음에 따른 비용 나. 과학기술 관련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 다. 정보단체 가입비 및 그 회비 라. 과학기술관련 국내외 학술회의(세미나, 웍샵, 심포지엄을 포함한다)참석비 마.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바. 기타 국내외 과학기술정보 획득을 위한 경비
3. 기술훈련비	가. 자체훈련 또는 국내외 위탁훈련비 나. 기술개발에 관한 세미나 개최 및 참석비 다. 국내외 기능경기대회 참가비 또는 국가기술자격 검정 응시경비 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 기능 장려기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또는 출연금
4. 연구시설	가. 전담부서건물(구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 증축 · 설치 및 구입에 따른 금액 나.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용 · 물품 · 기자재 · 장비 ·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필요한 비용
5. 중소기업 기술지도	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에 소요되는 비용 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생산기술연구원 및 민간생산연구소의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6. 연구기관의 육성	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은 특정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나.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출연금
7. 개발기술의 활용	가. 국내외 공업소유권 획득을 위한 출연료 또는 특허료로 지급되는 경비 나. 국내개발기술의 획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 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법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생산기술연구원 및 민간생산 기술연구소에 대한 출연금
8. 산업기술 연구조합의 육성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납부하는 회비, 연구개발분담금 등 부과금
9. 신기술사업 금융회사등에의 출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 사업금융회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
10. 정보처리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의 육성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다음의 비용 ①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건비 ② 소프트웨어 · 데이타베이스의 유지 · 보수 · 개발을 위한 비용

〈 ② 기술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11. 상표 및 디자인의 개발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12. 엔지니어링 산업의 육성	설계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기자재·장비·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필요한 비용

②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업이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임(조감법 제9조)

1.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자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법, 부가통신업, 무역 및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자

2.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가. 기술개발비

○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 연구용 재료비등 자체·위탁 및 공동기술 개발비 등

나. 인력개발비

○ 국내외 위탁교육훈련비 및 기술연수비, 사내직업훈련비등 인력개발비

3. 세액공제율과 이월공제

○ 다음의 세액공제방법중 하나를 선택

- 당해과세연도 기술 및 인력개발비 총지출액의 5%(중소기업이 지출한 금액의 경우에는 15%)를 세액 공제해 주거나,
- 과거 2년간 평균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50%를 세액공제

*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함

4. 세액공제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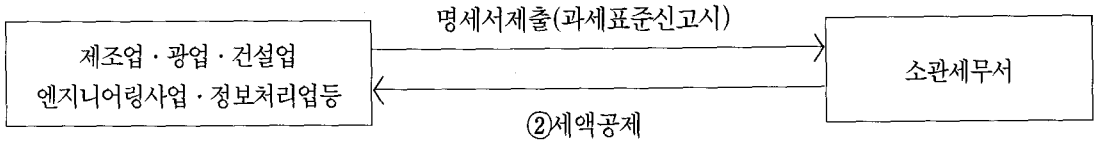

문 의 처

○ 재정경제원 조세정책과 : (02)503-9282/3 ○ 소 관 세 무 서 :

【참고】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비용(조감법시행령[별표 4])

구 분	사 용 기 준
1. 기술개발	가. 자체기술개발 ①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 ② 기술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참고】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비용(조감법시행령[별표 4])

구 분	사 용 기 준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 부품 · 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 가공비를 포함한다)및 시험연구비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용물품 · 기자재 · 장비 · 시설의 임차에 필요한 비용 ④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자(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 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지출하는 비용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 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 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 · 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 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 한다)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또는 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산업디자인 · 포장진흥법에 의한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 ②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다. 내국인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하거나 국내의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라.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마.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 의한 다음의 자로부터의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것 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기술지도 및 중소기업의 경영안정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생산기술연구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사.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을 위한 비용 아. 엔지니어링 기술수출을 위한 기술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 ①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다만, 이공계에 한한다) ②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에의 위탁훈련비 ③ 직업훈렵기본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 훈련비 ④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⑤ 기타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다음의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것 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분담금 다.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내직업훈련실시 및 직업훈련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재무부령이 정하는것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 자격검정응시 경비

〈 ③ 연구시험용 시설투자 세액 공제 〉

구 분	비 용
	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것 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비용 사.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것.

❸ 연구시험용 시설투자세액 공제 또는 감가상각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세액공제 또는 취득가액의 일정률을 감가상각해주는 제도임(조감법 제10조 제1항)

1. 세액공제 또는 감가상각을 받을 수 있는 자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을 취득한 자.

2.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종류란 제5호와 동란 제6호중 (2)내지 (4)의 고정자산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내용 연수표(갑)의 설비

3. 조세감면 범위

○ 다음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음.
- 연구시험용 시설투자금액의 5 /100(국산기자재는 10/100)을 세액공제
- 연구시험용 시설취득가액의 50 /100(국산기자재는 70/100)을 감가상각

4. 세액공제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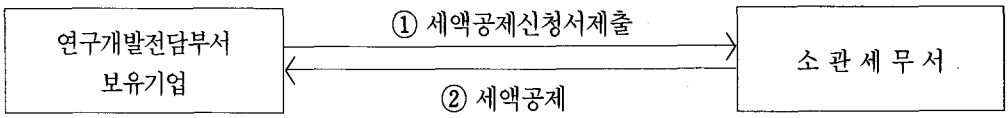

문 의 처

○ 재정경제원 조세정책과 : (02) 503-9282/3 ○ 소 관 세 무 서 :

❹ 신기술기업화사업용 자산투자세액공제 또는 감가상각

국내개발 신기술의 기업화사업용 자산투자금액의 일정률을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거나, 취득가액의 일정률을 감가상각 해주는 제도임(조감법 제10조 제1항)

〈 ④ 신기술기업화 사업용 자산투자 세액 공제 〉

1. 신기술기업화 사업의 범위

○ 과학기술처장관이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인정하는 다음의 사업

- 「특허받은 국내기술개발성과 ·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3 제1항 각호의 기관 및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 ·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한 신규고안 ·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산신기술 제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의 최초기업화사업

2. 감면범위

○ 투자금액의 3 /100(국산기자재의 경우는 10/100)을 세액공제

○ 취득가액의 30 /100(국산기자재의 경우는 50 /100)을 감가상각

3. 감면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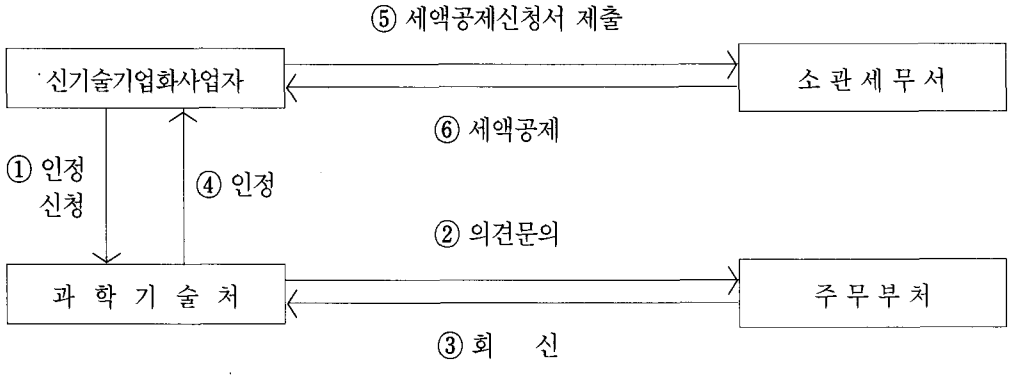

문 의 처

○ 과학기술처 기술개발과 : (02)503-7657, 500-3247 · 3256

○ 재정경제원 조세정책과 : (02)503-9282/3 ○ 소관세무서

⑤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동제도는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임(관세법 제28조의 5)

1.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가. 감면받을 수 있는 자

○ 과학기술처 장관이 인정 또는 확인하는 다음의 기관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공동연구시설을 확보하고 자연계 학사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 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산업 기술 연구조합
  - 사내기술대학 및 사내기술대학원

나. 감면대상물품

○ 고도기술의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테이프 또는 디스크로서 당해 물품을 수입하는 기관을 감독하는 주무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 고압가스 저장장치등 243개품목(별표1)

〈 ⑤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

○ 시약·부분품·원재료 및 견품
○ 사내기술대학(원)의 실험실습용품

다. 감면율

○ 고도기술의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테이프 또는 디스크 : 100분의 100
○ 별표1에 규정된 물품 및 시약·부분품·원재료·견품 : 100분의 80
○ 사내기술대학(원)의 실험실습용품 : 100분의 90

라. 감면물품의 최소한의 사용기간

○ 감면받은 물품은 그 수입면허일로 부터 3년의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는 당해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음.

마. 감면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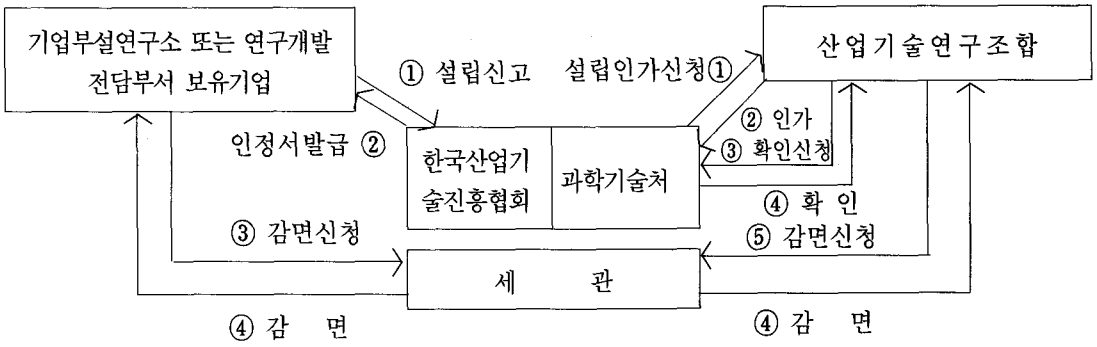

문 의 처

○ 과학기술처 기술개발과 : (02) 503-7657, 500-3247·3256
○ 재정경제원 관세정책과 : (02) 503-9292/3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진흥부 : (02)780-7601/10
○ 관할지및 통관지세관 :

2. 특정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가. 감면받을 수 있는 자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자연계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임을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처장관이 확인 추천하는 기관

나. 감면대상물품

○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기증물품 포함)

다. 감면율

○ 해당관세액의 90/100(공공의료기관 및 학교부설 의료기관은 50/100)

라. 감면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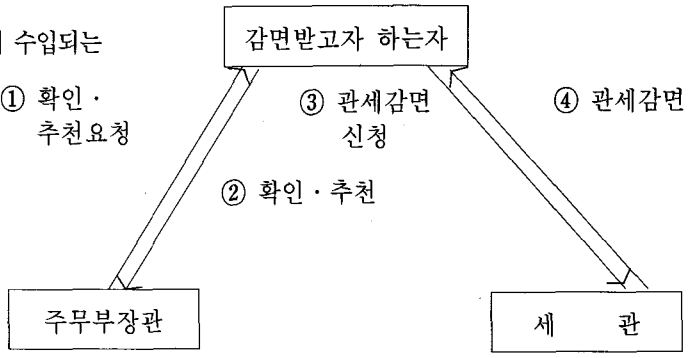

〈 ⑥ 시험 · 연구용 견본품에 대한 특별세 면제 〉

문 의 처

○ 과학기술처 연구관리과 : (02) 503-7628 대덕단지관리소 : (042)861-5002
○ 재정경제원 관세정책과 : (02) 503-9292/3 ○ 관할지 및 통관지세관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진흥부 : (02)780-7601/10

⑥ 시험 · 연구용 견본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와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 · 연구용의 견본품과 비영리 법인인 연구기관이 연구용으로 직접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써 국내 생산이 곤란하여 외국으로 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임(조감법 제103조 및 제108 동법 시행규칙 제7조)

1. 면제받을 수 있는 자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자연계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인 이상을 상시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과학기술처장관이 확인하는 연구기관

2. 면제대상물품

○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 · 연구용의 견본품으로서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

3. 면제물품의 최소한의 사용기간

○ 면제받은 시험 · 연구용 견본품은 반입한 날로부터 5년간 당해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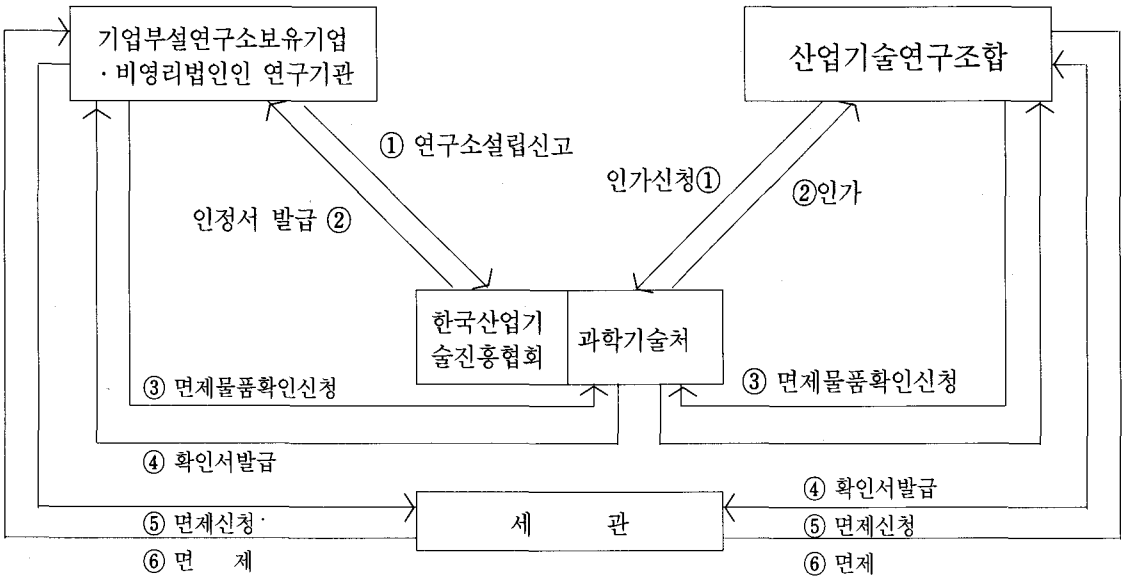

〈 ⑦ 기술개발선도 물품 특소세 감면 〉

문 의 처

○ 재정경제원 소비세제과 : (02) 504-3675
○ 과학기술처 기술개발과 : (02) 503-7657, 500-3247,3256 : (02) 504-3675
○ 관할지및 통관지세관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진흥부 : (02)780-7601/10

❼ 기술개발선도 물품에 대한 특소세 잠정세율적용

기술개발선도물품으로서 수출전략상 내수기반의 확대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시장진출 초기단계에 일정기간동안 특소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임(특별소비세법 제1조의 2)

1. 잠정세율 적용대상물품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2종에 규정한 물품중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수출전략상 내수기반의 확대가 필요하여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에서 규정한 물품
- 별표1 제2종 제5호(전기음향기기)의 물품중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CDP)및 디지탈오디오테이프레코더
- 별표1 제2종 제11호 물품중 캠코더 및 레이저디스플레이어(LDP)

2. 잠정세율

○ 기본세율에 대하여 최초 4년간은 10%, 5차년도에는 40%, 6차년도에는 70%를 각각 적용하고 7차년도에는 기본세율로 환원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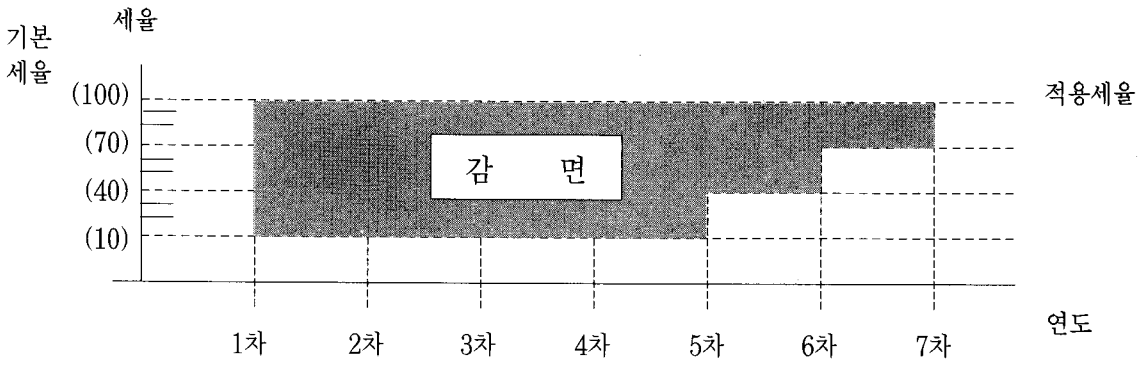

3. 잠정세율의 적용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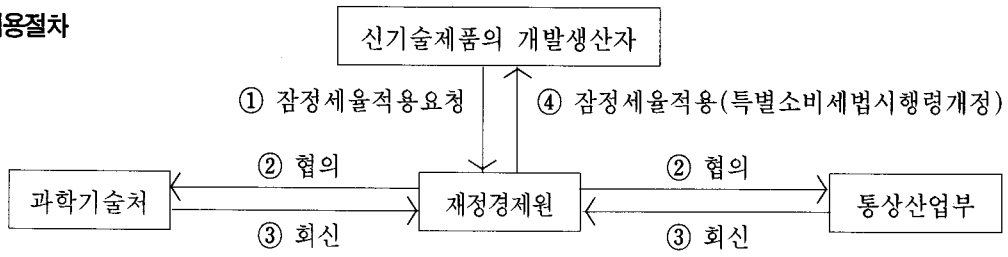

〈 ⑧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

문 의 처

○ 재정경제원 소비세제과 : (02) 504-3675
○ 과학기술처 기술개발과 : (02)503-7657, 500-3247 · 3256 ○ 통상산업 해당공업국 :

⑧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임(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128조의 2, 제184조의 2, 제234조의 13)

1. 면제대상 기업부설연구소

○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소

2. 면제대상 부동산 및 지방세의 범위

○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한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 보유하는 건축물 및 토지(건물바닥 면적의 7배 이내)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함

3. 면제받은 부동산의 최소한의 사용기간

○ 연구소 설치 후 2년 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지방세를 추징함.

4. 면제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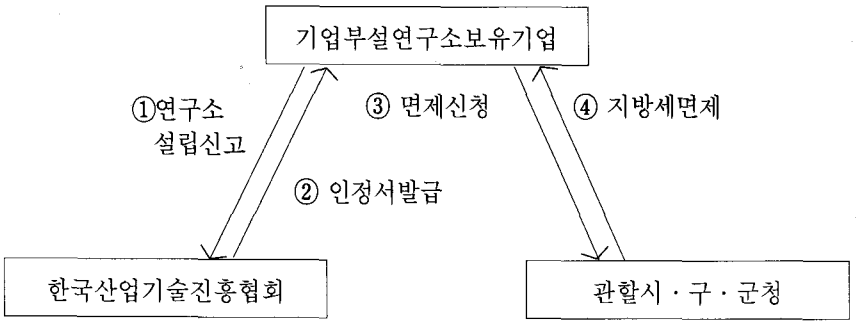

문 의 처

○ 과학기술처 기술개발과 : (02) 503-7657, 500-3247 · 3256
○ 내무부 세제과 : (02) 731-2510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진흥부 : (02) 780-7601/3

⑨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국내기업에 기술용역 또는 근로를 제공해 주거나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기술자등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임 (조감법 제15조).

1.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인

○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외국인

- 기계·전기·항공공업, 신소재산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부가통신업, 엔지니어링사업, 광업, 건설업 등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외국인

2. 면제대상소득 및 면제기간

○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함.

3. 면제절차

○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청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문 의 처

○ 재정경제원 조세정책과 : (02) 503-9282/3　　○ 관할세무서

⑩ 기술소득에 대한 조세감면

국내기술개발 기술의 이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임(조감법 제11조)

1. 기술소득의 범위

○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은 제외)을 계약에 의하여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조세감면 범위

○ 내국인에게 이전함에 따른 발생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 외국인에게 이전함에 따른 발생소득에 대하여는 당해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감면함. 단, 국내에서 상품화가 불가능하여 국외이전시에는 전액 면제

3. 조세감면 절차

〈 ⑩ 엔지니어링사업 세액 감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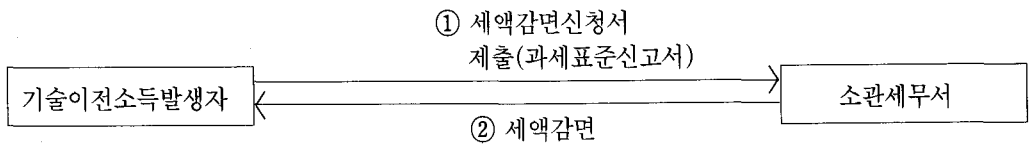

문 의 처

○ 재정경제원 조세정책과 : (02) 503-9282/3 ○ 소 관 세 무 서

⑪ 엔지니어링사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엔지니어링사업과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에 대하여 사업 개시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6년간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임(조감법 제6조)

1. 감면대상 사업자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등

2. 감면대상사업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과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3. 감면기간 및 범위

○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4. 감면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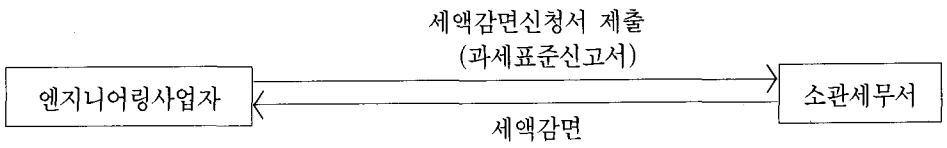

문 의 처

○ 재정경제원 조세정책과 : (02) 503-9282/3
○ 과학기술처 기술용역과 : (02) 503-7659/60 ○ 관 할 세 무 서

⑫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창업초기에 일정기간동안 제반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임(조감법 제6조)

1.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범위

○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분야의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시행령 제 29조에 의한 [별표 2]의 사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중소기업

2. 조세지원의 내용

○ 수도권외의 지역
- 창업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후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감면

○ 수도권 내의 지역
- 창업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후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를 감면하고, 그후 2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0% 감면

3. 조세감면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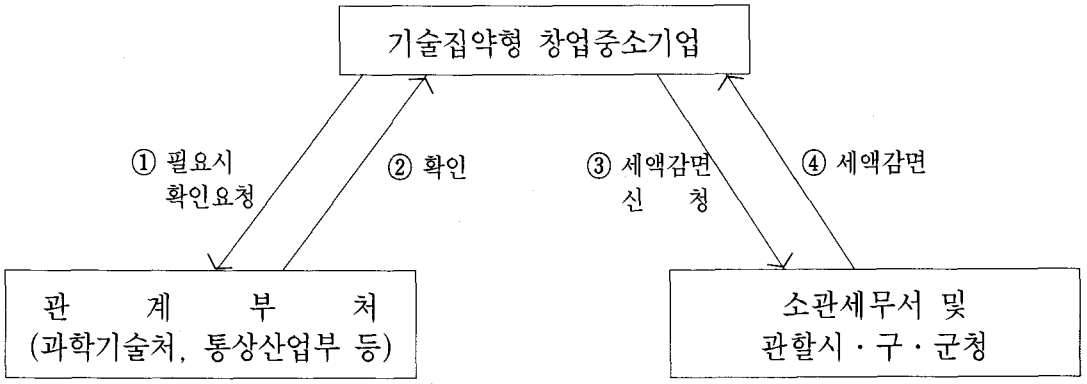

문 의 처

○ 재정경제원 조세정책과 : (02) 503-9282/3
○ 내 부 부 도 세 과 : (02) 731-2522
○ 통상산업부 창업지원과 : (02) 500-2583/4
○ 소관세무서, 관할시·구·군

[별표 2] 기술집약형중소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9조관련)

1.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2. 중소기업진흥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조성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업
3. 중소기업진흥법 제 38조 제 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기업화를 위하여 통상산업부부장관이 정하는 업종의 사업
4.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계열화품목의 사업
5.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신기술의 사업 및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 ⑬ 신기술 사업 금융회사에의 출자 조세지원 〉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고시한 국내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의 사업

6.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된 신규의 고안을 기업화하는 사업
7.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의 사업
8. 특정 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 및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의 성과 또는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9.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4의 품목의 사업
10.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11. 투자회사의 출자(투자조합의 자금에 의한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창업자의 사업으로서 투자회사의 출자의 지분이 창업자의 개시일로부터 창업심의회가 정하는 일정한 기간동안 당해 창업자의 주식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인 자가 영위하는 사업
12. 통상산업부장관이 기술개발촉진법과 부품 및 소재의 수입대체를 위하여 창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품목의 사업

⑬ 신기술사업금융회사등(에)의 출자에 대한 조세지원

신기술사업금융회사등의 자본금 조성과 신기술사업자등에 대한 출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사업금융회사등에 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등 조세지원을 해주는 제도임(조감법 제83조 및 제12조).

1. 신기술사업금융회사등의 범위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영업의 허가를 받아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조세지원 내용

○ 신기술사업금융회사등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20으로 하고, 당해 소득은 분리과세함.
○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자(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 출자한 주식이나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문 의 처

○ 재정경제원 조세정책과 : (02) 503-9282/3
○ 중소금융과 : (02) 503-9248/9
○ 통상산업부 창업지원과 : (02) 500-2583/4
○ 소 관 세 무 서

⑭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의 투·융자손실 준비금 손금산입

신기술사업금융회사등이 신기술사업자등에 투·융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조감법 제14조).

〈 ⑮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등의 출자 조세지원 〉

1. 신기술사업금융회사등의 범위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 부터 영업의 허가를 받아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손금산입한도

○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경우는 당해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과 조건부 융자한 금액 및 기타재정경제원령이 정하는 융자액 합계액의 100분의 50.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는 당해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3. 상계및 익금산입방법

○ 투·융자로 인한 손실발생시 발생손금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투·융자손실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함

○ 투·융자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4년간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최종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함.

문 의 처

○ 재정경제원 조세정책과 : (02) 503-9282/3　○ 재정경제원 중소금융과 : (02) 503-9248/9

○ 통상산업부 창업지원과 : (02) 500-2583/4　○ 소 관 세 무 서

⑮ 신기술사업투자조합등의 출자에 대한 조세지원

신기술사업투자조합등이 신기술사업자등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해주는 제도임(조감법 제83조)

1.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 조세지원 내용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당해 소득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함.

문 의 처

○ 재정경제원 조세정책과 : (02) 503-9282/3　○ 재정경제원 중소금융과 : (02) 503-9248/9

○ 통상산업부 창업지원과 : (02) 500-2583/4